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저금리 기조 및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과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이자수익금 사용 방안 강구(안 제4조)

4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범위 조정(안 제4조)
 -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 제한 삭제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,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시행 2020. 5. 22.)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규칙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
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(2001년 설치)

- 지원내용: 이재민 재해구호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, 노인복지지원사업, 장애인복지증진사업
- 기금조성('21년): 35,519,766천원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제2항은, 기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제한 한 것을 삭제하여 이월된 이자수익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사회복지기금은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4)에 따라 의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5)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, 노인복지 지원,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운용 중임.
- 현행 조례에서는 의무설치 기금인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대비 100% 사업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월된 이자수익금의 경우, 현행 조례에 따라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.
- ※ 2021.12월 기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금 이월액 현황(총 2억9천8백만원):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(1,700만원), 노인복지 계정(9,500만원), 장애인복지 계정(1억8천6백만원)
- 이에 본 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이월된 이자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본 개정안은 법령 상 문제가 없으며, 안정적인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현 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.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② <삭 제>

- 4)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9조(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획을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5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4조제3항은, 인용 규칙명을 현행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에서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한 것으로,
 - 이는 회계과 소관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이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시행 2020. 5. 22.)으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른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, 변경된 인용 규칙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